

보도해명자료

(15. 1. 2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 지경부의 강압과 왜곡
(15.1.20, 한겨레신문)

1. 기사내용

가. '자원펀드' 강권 공문, 발신자는 최경환, 제목 관련

나. 자원개발펀드 관련

- ☐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등에 최경환장관 명의로 자원개발 펀드를 강권하는 공문을 통해 자원개발 펀드 조성
 - 조성된 트로이카 펀드,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 모두 '13년말 기준 각각 25%, 26% 평가손실 기록
- ☐ 국민 노후 대비용 국민 연금도 투자에 1조 동원

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성과 평가 관련

- ☐ 산업부, 2013년 민관 TF를 통해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를 통해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을 '낙제점'으로 평가해놓고 지난해 국정조사가 논의되자 '성과'로 평가하는 등 정책실패 인정을 번복

라. 자주개발률 관련

- ☐ 산업부는 2008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대통령 임기말인 '12년까지 25%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하던 "365일"을 "실조업일수"로 바꾸는 꼼수를 씀

- 사비아 페루, 숨베 사업 등 국내로 도입하지 못하는 물량도 자주 개발물에 포함시키는 등 왜곡하였으며, 석유공사는 생산광구 매입에 치중

마. 최경환 장관 지도·감독 책임론

- 하베스트 인수관련, 최 장관은 인수 상황에 대해 간단한 구두보고만 받았다고 했으나 관용차 운영기록 등 분석결과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은 정황

바. 해외연수 관련

- 산업부 공무원들이 가스공사의 자원개발 사업거래 상대업체의 후원으로 유학을 가고, 지원액의 증액을 요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가. “ ‘자원펀드’ 강권 공문, 발신자는 최경환” 제목관련

- 자원개발펀드 재원확충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강권’은 사실과 다름
- 해당 공문의 발신은 담당과장 전결사항으로 이 경우 공문은 주무부처 장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장관’ 명의로 나간 것이며, ‘발신자 최경환’은 사실과 다름

나. 자원개발펀드 관련

- 자원개발펀드는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충방안으로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지속 추진되었음

- '05.9월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활한 탐사지원 및 중장기 자주개발을 제고를 위해 자원개발펀드 조성 추진 ('14년말 현재 16개 조성, 별첨)

* '06년 최초 베트남 15-1 유전펀드 출시(조성액 2,041억원, 참여기관 사학연금,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우본 등), 제도개선 등 추진

- 이후 자원개발 펀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트로이카 펀드*, 글로벌 다이너스티 펀드**를 조성

* '09년, 조성액 5,460억원, 참여기관 삼천리, SK 이노베이션, 산은, 수은, 한전, 포스코 등

** '10년, 조성액 1,340억원, 참여기관 한국투자증권, 비클레이즈, LG상사, 수은, 한전, 한투운용 등

- 동 펀드 조성과정에서 수은 및 한전의 경우, 펀드 관련 공문을 요청하여 동 기관에 지경부장관 명의(자원개발총괄과장 전결)의 협조 공문을 발송 한 바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투자 여부, 투자 규모 등은 각 기관에서 결정
- 동 펀드는 '13년말 기준 19.54%, 25.95% 평가손실이나, 각각 만기가 '19년, '20년으로 향후 손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움

□ 국민연금의 경우도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여부, 투자 규모 등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수익률 등을 바탕으로 결정

- 참고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등 해외 국부 펀드의 경우에도 대체투자수단의 일환으로 에너지·자원분야에 투자 중(싱가폴 테마섹 약 6%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음

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성과 평가 관련

□ 산업부는 2013년 국회('13.3월 장관청문회, 4월 추경예산국회) 및 감사원 지적('13.6월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 '13.5월~7월간 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13.10월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최종 발표하였음

* TF 구성: 공공·민간 공동위원장(산업부 2차관, 강주명 서울대 교수)과 학계, 자원개발 업계, 회계·컨설팅·투자 전문가 등 총 15명

* '13.10.10(목),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

□ 동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간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 주요 성과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0%대 진입, 석유공사의 대형화(세계 90위권→70위권), 중동 등 핵심 산유국 진출, 세일가스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등을 평가하였으며,
 - 미흡한 점으로는 부채비율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M&A·생산광구 매입 치중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불균형, 재정·차입 의존 과다, 기술력 강화 등 질적 성장 소홀 등을 지적하였음
- 언론보도에서는 투자 절차의 객관성 미흡, 투자효율성 악화, 국내 공기업간 과당경쟁 및 구조조정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고 하였으나 동 내용은 최종 보고서와 다름

□ 한편 산업부가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 잘한 점으로는 해외자원개발 물량 확대로 최소 생산규모 확보(20만 B/D), 중동 등 핵심 산유국 진출과 모잠비크·UAE 등에서 탐사 성공을 평가하였으며,
 - 미흡한 점으로는 탐사 기술력 향상 등 역량강화와 전문인력 확보 미흡, 공기업 부채 증가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지적하였음
- 따라서, 산업부의 국회 제출 자료와 '13년에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의 내용은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이며, 정책실패를 인정했다가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라. 자주개발률 관련

□ 자주개발률은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광의의 개념과 개발하여 도입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 가능함

- 우리나라는 '00년 자주개발률 개념을 도입한 이후,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왔으며, 3년마다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음

구분	수립 시기	자주개발률 목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04.12월	'13년 석유 15%, 가스 30%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07.8월	'13년 석유 17%, 가스 31%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10.12월	'12년 석유 16%, 가스 24%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14.8월	없음(장기 전망지표로 활용)

□ 자주개발률 산정 방식은 과거 연간기준(연간 생산량/연간 수입량)을 사용하였으나, M&A의 경우 실제 생산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08년 실조업일수기준(1일 자원개발물량/1일 수입량)으로 변경하였음

- 그러나, 실조업일수 기준으로 자주개발률을 산출하는 것이 성과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있어, '14년 수립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자주개발률 산정 방식을 '연간기준'으로 변경하였음
- 이와 함께, 국내 도입되는 자원량으로 오해를 초래하는 자주개발률 명칭을 '자원개발률'로 변경하고,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현주소와 미래를 알려주는 장기 전망지표로만 활용하기로 하였음

□ 언론보도에서는 사비아페루 사업에 대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생산되는 석유는 모두 페루 정부 몫이며, 석유공사가 한 방울의 석유도 뜻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석유공사는 보도해명자료('15.1.19일)를 통해 사비아페루 사업 관련 광권계약 중 생산광구(Z-2B) 계약은 서비스 계약이나 그 외 10개 탐사광구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이며,

-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생산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우리측과 페루 PetroPeru간 계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측이 광구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석유공사 보도해명자료('15.1.19) 참고

- 한편,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들이 탐사보다 인수·합병에 주력하였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 이명박 정부 시절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여 개발·생산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지만,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도 함께 증가하였음

* 탐사사업 신규 투자(건) : (참여정부) 75개 < (MB정부) 80개

마. 최경환 장관 책임론 관련

- 산업부는 석유공사법에 따라 석유공사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하나, 이는 세부 구체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라 일반적, 총괄적 차원의 관리를 의미함

※ 석유공사법 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

-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결정은 기술, 사업성, 재무리스크 등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분야로서 공기업 책임하에 결정됨
-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으며,

- 아울러 '08.2월 제정된 “공기업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11호)” 제3조 (주무부 장관은 공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3년-2012년간 공기업은 총 125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참여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시 공기업 사장이 결정한 것임

[2003-2012 장관 재임기간중 참여 사업 수]

장 관	재임기간	참여사업수	
		유가스	광물
윤진식	'03.02~'03.12	3	1
이희범	'03.12~'06.02	12	4
정세균	'06.02~'07.01	9	6
김영주	'07.01~'08.02	16	6
이윤호	'08.02~'09.09	13	8
최경환	'09.09~'11.01	13	12
최중경	'11.01~'11.11	7	4
홍석우	'11.11~'13.03	7	4

- Harvest사 인수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파악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석유공사 관용차 운행기록에 따르면 '09.10.18(일) 16:00-18:00간 강영원 전 사장이 지경부를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당시 접견시간은 5-10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09.10.20-23일간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캄보디아 방문시 최경환 장관은 공식수행원으로, 강 사장은 수행 기업인으로 동행
- 그러나 10.20(화)일, 강영원 전 사장이 11:40-13:00 지경부를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최경환 장관은 동일 11:30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베트남으로 출발하였음

- 대통령 해외방문 수행시 장관은 대통령 일정에 맞추어 행동하기 때문에 별도로 동행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기간 중 보고 자체가 불가능하였음
- 한편, 산업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사와 실무협상차 캐나다를 갈 때 마다 출장 내용을 사전 통보받고 이는 최경환 장관에게 직보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공기업 사장의 해외출장은 담당 실무진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불과함

바. 해외연수 관련

- 한·호주간 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교류는 정부차원의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임
 - 제24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08.11월)*, 제25차 협력위('10.3월) 등 정부간 논의과정을 거쳐 양국간 에너지·자원협력 차원에서 장학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도입계약을 대가로 이뤄진 것이 아님
 - * 합의서에 “양국은 자원개발전문가 양성 및 교류에 상호 협력한다.”고 명시
 - * 제24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에 해당업체(산토스社) 임원 참석
- 동 장학프로그램이 최초 논의된 시점은 '10.12.17일부터이며, GLNG 도입계약 승인('10.12.3일)이 이루어진 이후 인 바, GLNG 관련 계약과 연관성이 없었음
 - 장학협약 체결시, 양국 정부와 관련 업체는 해당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저촉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협약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협약서에 포함하였음
 - * 협약서 상 “①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당사자들은 상호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②협약당사자들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동 협약내용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③다른 협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 만일 GLNG 계약체결을 대가로 유학자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기업은 호주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큰 불이익을 받게 됨

* GLNG 운영사가 도입계약 대가로 유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제 반부패협약에 따라 호주 국내법에 의한 형사처벌 및 국제 정부조달입찰에 제한을 당함

□ Total, Shell, BP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들도 자원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에너지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

* “Total’s International Scholarship Program”, “BP Scholarships”, “Nigerian Scholarships” 등

□ 장학프로그램의 체재비 조정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사항임

※ 우리부는 13.9.25일자 연합뉴스의 “투자대가로 외국기업서 공무원 유학비용 받아” 보도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보도해명자료를 냄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윤용석 사무관(044-203-5141). 끝.

〈별첨〉 해외자원개발 펀드 조성 현황

펀드명	조성 시기	운용 기간	조성규모 (억원)	운영기관
한국베트남15-1유전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06년	5년 (만료)	2,041	한국투자신탁운용
하나UBS암바토비니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07년	15년	1,302	하나UBS 자산운용
마이에셋 카작 무나이석유 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회사	'08년	3년 (만료)	120	마이에셋 자산운용
한국투자 사모 글로벌프론티어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09년	20년	1,880	한국투자 신탁운용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전문회사	'09년	10년	5,459	삼천리+SK+산업은행
더커 글로벌프론티어 사모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	'10년	20년	3,075	JB(舊더커) 자산운용
글로벌 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 전문회사	'10년	10년	1,340	한국투자증권+바클레이즈+LG상사
더커 뉴프론티어 사모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4호	'11년	5.5년	8,665	JB(舊더커) 자산운용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2년	15년	3,501	한국투자신탁운용
포스코 우리 이아이지 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	'12년	10년	5,600	우리자산운용+이아이지코리아
데보니안 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전문회사	'12년	6년	2,000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Parallel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	'13년	10년	4,001	한국투자신탁운용
.EQP 포스코 글로벌 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 전문회사	'13년	10년	6,800	이큐파트너스
RG Galaxy 사모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제1호	'13년	3.5년	20	RG 에너지자원자산 운용
한국전력우리스프링 글로벌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13년	10년	2,000	우리자산운용
RG에이치브이엘 사모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4년	7년	208	RG 에너지자원자산운용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원개발전략과 유법민 과장(02-2110-5530), 이용훈 사무관(02-2110-5440)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제시

-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T/F 결과 도출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0(목)일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T/F(5.8일 출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내실화 방안’을 제시
 - T/F(공동위원장 강주명 서울대 교수)는 그간 총 23회의 분과회의, 5회의 총괄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포함한 해외자원 개발사업 내실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였음
 - * TF 총괄분과는 학계·업계·투자전문가·회계기관 등 민간위원(8명)과 공기업 관련 공공위원(7명)으로 구성됨
- 지난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 전략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자원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 유·가스전 탐사보다는 M&A와 자산인수에 주력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자원개발 실력향상 노력은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 이에, 그간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과는 계승·발전시키고 문제점은 원인분석 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산업부가 제시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안정적 부채관리)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 수준까지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부채비율을 낮추어 나가되, 확실적인 목표제시 보다는 공사별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부채관리 목표 설정

① 석유공사 : ('12년) 168% ⇨ ('17년) 177%, ⇨ (장기) 130%

* '15년 UAE 생산유전 등 신규사업 추진 때문에 부채율 상승 후 하향 전망

② 가스공사 : ('12년) 385% ⇨ ('17년) 274%, ⇨ (장기) 250%

③ 광물공사 : ('12년) 177% ⇨ ('17년) 169%, ⇨ (장기) 130%

② (포트폴리오 재정립) 기존의 생산광구 매입대신 탐사역량 제고를 위해 탐사투자를 확대하여 탐사·개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再구축

- (석유공사) 신규사업은 탐사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탐사비중을 '08~'12년 평균 10%에서 '13~'17년 평균 29%로 확대하고, 기존 생산자산 중 비핵심사업은 구조조정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
- (가스공사) LNG 도입에 연관성이 큰 탐사·개발사업 투자에 주력하고, 운영권 사업을 확대
- (광물공사) 대형 개발사업(암바토비, 볼레오 등)은 생산단계에 조기 진입하고, 민간 투자가 부진한 동·회유금속 탐사·개발에 집중

③ (신규 투자재원 확보) 재무적 투자자 유치, 유망자산 유동화, 비핵심 자산매각, 예산절감,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 재원을 마련

- 자산매각은 단기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

④ (투자 프로세스 개선) 투자 초기단계부터 전문가그룹을 구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

- 프로젝트 이력제, 투자 실명제 운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
-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의 Best Practice 등을 벤치마킹하여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규정을 마련

⑤ (공기업 협력체계 구축) '전력공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 동일 지역 중복진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전력공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핵심역량을 감안, 중장기 집중 공략할 지역과 프로젝트별로 특화된 진출 전략을 수립

⑥ (경영환경 개선 등) 경직적 단기 성과지표로 활용되어 투자효율성을 저해한 자주개발률 지표를 개선하여 에너지 공기업을 탐사중심 기업으로 유도(구체적 방안은 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12월)에서 확정)

- R&D 투자규모를 현재보다 2~5배 이상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셰일가스와 현장연계형 탐사기술에 집중 투자
- Dana(탐사분야), Ankor(셰일오일)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자회사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선진기술 습득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간 협력을 강화

□ 한편, 부채비율 개선 등 주요 T/F 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추진하고,

- T/F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T/F를 존치토록 하겠음